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제2016 - 13 - 051호

안 건 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사실조사를 거부·
방해한 위반행위에 관한 건

피 심 인 (1) .

[Redacted]

(2)

[Redacted]

(3)

[Redacted]

의결연월일 2016. 3. 10.

주 문

피심인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각 과태료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5.7.1.~'16.1.31.)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155개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요구자료(USB, 외장하드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말기 판매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2월 2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은 (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ii) 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조사관의 요구자료(USB, 외장하드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말기 판매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Ⅲ.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	500	1,500	3,000	5,000

2. 추가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들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은 없다.

3.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회 위반에 해당하는 5,0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V.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최성준 (인)

부위원장 김재홍 (인)

위원 김석진 (인)

위원 이기주 (인)

위원 고삼석 (인)